### [서식 예]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(다세대주택, 특정유증을 원인으로)



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

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〇〇. 〇. 〇.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 청 구 원 인

1. 원고와 소외 망 ●●●와의 관계 및 유증

원고는 소외 망 ◉◉●와 19○○. ○. ○.부터 10여년을 동거하였으나,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바, 소외 망 ◉◉●는 20○○. ○. 소외 망 ◉◉●의 재산 중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.

2. 소외 망 ●●●의 사망과 피고의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 상속 그런데 소외 망 ●●●는 위와 같은 유언공증을 한 뒤 20○○. ○○. 사망 하였으며, 소외 망 ●●●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거동을 할 수 없는 틈을 타서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를 포함한 소외 망 ●●● 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.

3. 피고의 유증이행청구의 거절

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유증을 이유로 별지목록 기재 아파 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, 피고는 그 이행을 거절하 고 있습니다.

#### 4. 결론

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〇〇. 〇. 〇.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유언공정증서

1.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3호증 기본증명서

(단, 2007.12.31.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)

1. 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

(또는,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)

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토지대장등본 1통

1. 건축물대장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 O O O . O O . 이 연구 연구 연구 (서명 또는 날인)

## ○○지방법위 귀중





# 부동산의 표시

### 1동의 건물의 표시

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

[도로명주소]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제102동

1층 000.0 m²

2층 000.0 m²

3층 ○○○.○ m²

지층 000.0 m²

###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구 조 철근콘크리트조

건물번호 201호

면 적 OO.Om²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: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ㅇ,ㅇㅇㅇ㎡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0,000분의 00.0. 끝.

				ნ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 멸 시 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	v.klac.
		기 간	※ 아래(2)참조	M.M.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
비 용	·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3)참조			
	·송달료 : ㅇㅇㅇ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	
및 기 간	·판결서가 송달된	날부터 2주 여	기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	항)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등기·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4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소멸시효
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(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다9797 판결),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(대법원 1976.11.6. 선고 76다148 판결; 1980.1.15. 선고 79다1799 판결; 1988.9.13. 선고 86다카2908 판결: 1999. 3. 18. 선고 98다32175 판결 참조).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이를 사용·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·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.(대법원 1999. 3.18.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)

#### ※ (3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

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